# 19대 대선 미디어정책 제안 미디어 민<del>주주</del>의 실현을 위한 차기정부의 개혁과제

2017.4.6 **언론개혁시민연대** 

# [미디어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19대 대선 정책 제안문] **언론자유와 미디어공공성**커뮤니케이션 주권의 체제를 이 땅 위에 수립하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 하지 않는다.' 성큼 봄이 다가온, 그래도 여전히 깊은 상처가 수습되지 않은 채 남은 이 땅에 뚜렷이 새겨진 구호다.

겨울 내내 공화국의 몰락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광장에 모인 남녀노소 대중들이 한 마음으로 외친 노래다. 수많은 촛불시민들이 거리를 행진하고 청와대를 둘러싸며 반복한 감동의 선언이다. 평 화롭기만 한 봉기의 강렬한 슬로건이었다.

그것은 국정을 농단하고 민주질서를 파괴한 국가-비선-자본의 비리 커넥션에 대한 단호한 고발이기도 했다. 거짓 선전으로 부정의 진상을 은폐하려는 온갖 부역 권력들에 대한 비수 같은 경고였다. 촛불은 승리한다. 우리의 명령을 따르라. 부정한 무리들을 당장 파면하라.

대통령이 탄핵되고 구치소에 수감되었다. 삼성 이재용, 청와대 실세 김기춘, 비선실세 최순실도 같은 신세로 전략했다. 법 처벌이 진행 중이다. 동시에 대통령 선거가 앞당겨졌고 어느 때보다 야당으로의 정권교체 가능성이 높아졌다. 희망이 싹트고 있다.

그러하니 촛불은 이제 그 사명을 다한 것인가? 아니다. 대한민국을 혁명적으로 대개조하라는 촛불의 명령이 여전히 미제로 남는다. 거짓이 감히 진실을 침몰시킬 수 없는 민주공화정 체제를 수립하자는 혁명의 정신이 대통령 선거와 그 이후 미완의 과제로 이어진다.

특정 정당의 집권으로 완결될 수 없는 촛불혁명이다. 다른 시스템 변화와 함께, 자유언론 활동이 철저히 보호되고 권력비판과 여론반영을 위한 미디어 독립성·공공성이 제도적으로 보장받는 민주공화국 기틀을 재건할 때 비로소 정권교체는 완성된다. 한국사회 대변혁을 위한 권력교체로서만 촛불혁명은 승리로 마감될 수 있다.

대선이 다가왔다. 촛불들이 빚어낸 희망의 사건이다. 이 중대한 선거는 결코 특정 정파의 승리 목표에 그칠 수 없다. 모두를 위한 재민주화의 수단, 과정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 언론개혁시민연대가시민단체, 노동조합들과 함께 미디어 개혁과 언론자유 쟁취, 커뮤니케이션 주권 보호를 위한 대선 미

디어 정책을 내놓는 까닭이다.

촛불의 정신을 쫒아, 우리는 '미디어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차기정부의 개혁과제'를 제출한다. 미디어 공공성과 언론표현의 자유, 정보인권, 시민주권, 방송의 독립성을 미디어 민주주의 5대 가치로 내세운다. 미디어 5대 가치 실현을 위한 방송통신 거버넌스 계획 일곱 개,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를 위한 정책과제 아홉 개 등 총 16개를 구체적 개혁과제로 꼽는다.

정권교체를 내세운 모든 정당, 정권교체를 원하는 대통령 후보들이라면 반드시 우리의 이 19대 대선 미디어 정책 제안을 성심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불행한 공화국, 불안한 민주주의의 적폐를 청산하는 길이다. 그게 촛불의 희망을 진지하게 책임지는 정치적 자세다.

미디어개혁의 사회합의를 누구도 거스를 수 없다. 언론자유와 미디어공공성, 커뮤니케이션 주권의 체제를 이 땅 위에 수립하는 게 정답이다. 이 시대의 명령을 쫓아, 역사의 소명을 겸허히 다하고자, 우리는 성실하게 준비하고 치열하게 토론한 이 제안서를 내놓는다.

#### <전문>

# 미디어 민주주의 5대 가치

# I.미디어 공공성 II.언론·표현의 자유 II.정보인권 IV.시민주권 V.방송의 독립성

# 1. 5대 가치 구현을 위한 방송통신 거버넌스 개혁

# < □> 미디어 공공성

# [과제1] 방송통신위원회의 민주적 재구성

#### ① 현황과 문제점

#### 규제 포획과 정경유착

-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장에 포획되어 사업자의 로비창구로 전락함. 조정 능력을 상실하고 사업자에 휘둘리면서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초래함.
- 미디어 공공성과 시청자·이용자를 위한 정책은 산업논리에 밀려 실질적으로 배제됨.
- 정보통신사업자단체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주요 통신 규제업무들을 직·간접적으로 위탁 받거나 자율규제라는 형식으로 운영하여 이동통신3사의 과점적 시장구조를 강화함.
- 미래부에서는 재벌대기업이 정권과 결탁하여 특혜를 받는 노골적인 정경유착이 발생함.

#### 방송장악과 언론자유 통제

-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언론자유를 탄압하는 도구로 활용됨.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공영방송 사장을 불법 해임하고, 낙하산 사장을 임명하는데 적극 가담. 부적격인사들을 공영방송 이 사로 선임하고, 부당해고 등 언론탄압을 방치함.
- 종편 도입을 강행하여 여론의 다양성을 훼손. 솜방망이 징계와 봐주기 심사로 종편 폐해 규제 실패.

#### 부처 간 업무 분장의 혼란

- 미래부-방통위 간 권한의 혼재와 업무 중복으로 인하여 정책지연과 혼란이 발생함.
- 이런 혼란은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부처 간에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함.

# 행정의 비민주성, 불투명성

- 합의제 위원회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여야 3대2 구조로 인해 일방 독주가 가능함.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장에게 과도한 권한 집중.
- 중요한 회의를 공개하지 않거나 영업 비밀을 이유로 사업자 제출 자료를 비공개. (예 : 종편심사자 료 소송)
- 민간 협의체나 TF, 별도 심사위원회가 운영되지만 참여인사들이 자의적으로 선정되거나 대부분 사업자에 기울어진 인물로 구성.
- 공청회 등은 실질적인 의견 수렴이나 토론이 되기보다 형식적, 요식적 절차로 진행

#### ② 개선방향

# 미래부 해체 ·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 복원

-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긴 했지만 방통위 설립의 필요성과 역할, 구조 등은 방송통 신융합추진위원회의 1년여 간의 논의를 통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사회적 합의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할 수 있음. 방통위 모델을 다시 채택하되 구성과 운영에 있어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함.
- 미래부 해체. 방송규제의 일원화. (미래부 유료방송정책의 방통위 이관)
- 미래부 통신규제정책·인터넷 정책의 방통위 이관.

# 방통위 문제점 개선

- 방통위 독립성 보장 : 19대 대통령 후보는 당선 시 방통위의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반드시 대국민 공약으로 발표.
- 방송통신위원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위해 위원 증원 필요.

#### ■ 위원 선임방식

- ① 방통위원장 대통령 직접 지명 권한 폐지 → 국회가 추천한 후보 중에 지명
- ② 지역성 구현을 위해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市·道知事)에 후보 추천 권한 부여 → 시도지 사는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각 1인을 추천
- ③ 국회 상임위는 시도지사 추천 후보와 국회 교섭단체 추천 후보를 공동 심사하여 방통위원 후보를 추천, 대통령이 임명.
- ④ 합의제 구현을 위해 위원수는 짝수로 하며, 시도지사 추천 인사를 4/10이상 할당.
-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추천하지 않은 정당이 추천한 후보 중에 호선

#### ■ 위원회의 구성

- ① 방송 소위원회, 통신 소위원회를 두어 각 영역을 전문적으로 다루되 소위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안건, 혹은 방송통신 전체를 아우르거나 새롭게 나타난 미디어와 관련된 안건은 전체회의에서 의결, 전체회의도 전원 합의로 의결
- ② 시청점유율 조사 및 산정, 미디어 기업결합 및 방송통신경쟁상황평가를 상시·전문적으로 수 행하는 미디어공정경쟁 소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

#### ■ 국민 참여, 투명성 보장, 책임성 강화

- ① 모든 회의는 공개를 원칙. → 방청허용 및 인터넷 (생)중계실시
- ② 비공개 정보의 경우에도 해당 결정을 의결할 당시 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됨과 동시에 자동 공개, 또는 시한을 정하여 자동공개,(3년)
- ③ 방송법 제9조(허가, 승인, 등록) 15조(변경허가), 15조의 2(최다출자자 변경승인), 17조(재허가), 18조(허가, 승인, 등록의 취소)에 해당하는 소관사무의 경우 별도의 심사위원회 구성을 금지, 방통위가 직접 심사토록 하고 모든 회의를 공개.
- ④ 통신사업자들의 이익단체인 한국정보통신(KAIT)가 사업자 단체로서의 업무성격에 부합하지 않게 △규제업무에 관여, △자율규제형식으로 통신산업의 주요 공공정책에 개입하는 것을 제한 또는 금지함.

#### 방송통신규제기구 # ICT전담부처·4차 산업혁명 콘트롤타워

- 차기정부 조직개편 논의 과정에서 ICT전담부처 주장이 제기되고, 일각에서는 미래부보다 덩치를 키운 공룡부처를 제안하고 있으나 특정산업을 정부주도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은 낡은 패러다임이며, 미래부 실패의 반복일 뿐.
-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비는 ICT 분야에만 한정되어서는 안 됨. 실업과 노동구조의 변화, 문화와 윤리 변화의 사회문화적 측면, 자라나는 세대의 교육과 기성세대의 재교육, 프라이버시 침해나 감시와 같은 인권적 측면, 사회안전망의 구축 등 사회 각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함. 4차 산업혁명 대응을 특정부처가 전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함.

# <!!> 언론 · 표현의 자유

# [과제2] 인터넷 행정심의 폐지

#### ① 현황과 문제점

#### 표현의 자유 탄압

■ 정부 정책이나 권력자에 대한 비판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정이나 트위터 계정에 대한 차단 등 인터넷 통신의 매체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 자의적 심의로 논란을 계속 빚어옴. 2MB18nomA(http://twitter.com/2MB18Noma) 국내 인터넷 접속 차단(2011년), 사드 비판 게시물 삭제(2016년) 등.

#### 인터넷 행정심의의 위헌성

■ 사법부의 판단도 없이 행정기구가 자의적으로 인터넷 상의 게시물을 삭제, 차단하는 것은 국가의 검열로서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을 침해함.

# ② 개선방향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해체 및 통신심의 폐지

■ 유엔이 권고한 바와 같이, 정치적, 상업적 및 기타 부당한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기구로 방심위의 통신심의 권한을 이양함.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 권한을 폐지하고, 불법이 아닌 유해성심의를 금지하는 등 심의대상을 축소. 명예훼손 등 개인의 권리침해 게시물은 심의기관이 아니라 임시조치 및 분쟁조정 제도를 활용.

# [과제3] 방송 행정심의 축소 • 시청자 참여 심의

#### ① 현황과 문제점

#### 과잉심의

■ 심의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심의규정이 불명확하여 자의적 심의가 가능함. 사실상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어떤 방송이든 제재할 수 있어 과잉심의를 초래하며 최소심의원칙을 위배함. 여기에

정부여당이 과반을 차지하는 구성방식이 함께 작용하여 정부 비판보도를 탄압하는 도구로 활용됨.

#### 방송사와 시청자의 소통 저해

■ 행정권 중심의 현행 심의 시스템은 방송사와 시청자의 소통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시청자는 방송사와의 '소통'보다는 행정권에 의지한 '징계'를 선호하게 하고, 방송사는 자체적인 불만처리서비스의 품질향상을 소홀하게 만드는 구조.

#### ② 개선방향

# 행정심의 대상·기구 축소

■ 행정심의 대상과 기준을 대폭 축소함. 행정심의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만 남기되 규정은 명확성을 갖춰야 함. 헌법적 권리인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심의기준을 행정기구가 임의로 정해서는 안 되며 법률에 명기하여 국회가 결정하도록 함. 방송심의 기능은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

#### 시청자위원회에 심의 권한 이양

■ 방송법상 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방송사업자의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업무.

■ 방송법상 방송사업자의 의무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 △시 청자위원회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자의 출석·답변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용, △시청자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그 처리에 관한 사항을 방송통신위원회 에 보고

■ (1안) 방송사에 설치된 시청자위원회를 시청자불만처리 전담기구로 정하여 방송편성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민원처리를 전담. 방통위는 관리, 감독만 하고 제반사항을 재허가·승인심사에 반영.

(2안) 시청자위원회를 1차 심의창구로 하고, 행정기구는 시청자위 처리결과에 불복한 민원에 한해서 만 심의를 개시할 수 있도록 심의요건을 제한.

# <Ⅲ〉정보인권

# [과제4]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 강화

#### ① 현황과 문제점

#### 독립성 결여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인사와 예산의 독립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기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 권한이 매우 제한적임. 국가인권위는 <2012~2016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권고안>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심의, 의결기능만을 담당하고 실질적인 개인정보보호정책 수립, 개인정보 수집자 감독, 개인정보 침해 구제 업무는 행정안전부에서 담당하여 사실상 독립적인 기구로보기 어렵다"고 지적함.

#### 독립위원회 강화의 필요성

■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는 스스로가 방대한 개인정보의 보유, 운영 주체로서 개인정보의 이용과 보호라는 상충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음.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정보주체의 동의권을 무력화하고, 주민등록번호 체제 개편에는 소극적인 등 개인정보 보호에 역행하는 입장을 보여왔음.

#### ② 개선방향

#### 개인정보위원회 독립성 부여 및 역할·권한 강화

- 행정자치부의 개인정보 감독권한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명실상부한 국가컨트롤타워 수립.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민간, 공공부문의 통합적인 감독권을 부여하고, △행정입법권을 부여하여 야 함. 특히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인사, 예산상의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위원장의 상임화와 상임 위원의 확대로 독립적, 전문적 업무수행 △위원의 신분보장 규정 마련 △타부처 파견 및 복귀가 아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독자 인사권 보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예산편성권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한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이 필요함.

# <IV> 시민주권

# [과제5] 공동체미디어진흥을 방송·통신과 함께 방통위 주요 소관업무로 정립

#### ① 현황과 문제점

#### 마을공동체와 함께하는 수많은 미디어를 외면해온 10년

- 지난 10년 간, 전국 7개소의 공동체라디오방송국과 수백개의 마을공동체미디어(라디오/방송/신문) 가 확산되며 작지만 가장 민주적인 공론장을 전국의 방방곡곡에 만들어 옴.
- 시민들을 서로 만나게 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해온 공동체미디어는 전세계적으로 공공적 서비스이자 미디어의 제3영역으로 인정받아 정책적 위상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한국의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0년 간 아무런 지원정책도 수립하지 않고 외면함으로써 우리사회의 민주적 소통과 풀뿌리민주주의의 성장의 근간을 가로막아옴.

#### 지역미디어센터·퍼블릭액세스·미디어교육 정책을 방치해온 10년

- 지역미디어센터가 전국 40여개로 확대되고, 시민들의 방송참여욕구와 수요는 갈수록 늘어나고, 지역·세대·계층을 아우르는 많은 시민들에 대한 미디어교육의 필요성이 확인되어 온 지난 10년. 지역미디어센터가 지역별로 균형있게 설립되고 해당 지역·권역별로 연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정책을 수립해야할 방송통신위원회는 부처간 소통없이 중앙집중적인 방식의 정책만을 추진해옴.
- 또한 시민들이 직접방송에 참여할 수 있는 퍼블릭액세스 정책은 10년간 제자리걸음이고, 변화되는 미디어환경에서 모든 이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할 미디어교육지원정책은 철학과 지향의 정립 없이 파편화되어 표류하고 있음.
- 특히,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미래부, 지방정부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지역미디어 센터·미디어교육 지원정책은 도리어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

#### ② 개선방향

#### 미디어시민주권의 강화를 목표로 하는 방송통신정책·기구의 재구성

- 공동체미디어진흥을 위한 법률정비, 방통위 산하 공동체미디어발전특별위원회 설치 등 미디어시민 주권을 강화하고 풀뿌리의 민주적인 공론장을 강화·확산하기 위한 방송통신정책·기구의 재편방안을 마련해야 함.
- 부처의 규모유지와 패권을 위한 것이 아닌, 자치분권·미디어문화다양성·미디어민주주의 가치를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지역미디어센터·퍼블릭액세스·미디어교육 정책의 재편방안을 마련해야 함.
- 현재 KBS에 해당되는 시청자참여프로그램 편성의무화를 모든 공영방송으로 확대하고, 지역케이블 방송 및 유료방송에도 확대할 수 있는 정책강화방안 마련 필요. 더불어 시민참여 전문채널(RTV)에

대한 지원정책의 정비·강화가 필요함.

#### 공동체미디어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상향식순환체계와 협치구조 마련

- 중앙정부의 공동체미디어진흥정책을 강화하되, 지역정부 차원의 관련 정책역량이 강화될 수 있는 정책순환체계수립이 필요함. 지역정부와의 소통을 통해 공동체미디어진흥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키우고 지역정부 차원의 정책추진과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역할을 해야 함.
- 공동체미디어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 산하지원기관을 정비하고 강화하되, 중앙정부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자율권을 보장해야 함. 더불어 산하지원기관이 단순히 지원사업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대상(단체·및 개인)과의 사전협의·조율을 통해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산하지원기관의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강화, 사업운영가이드 제시, 성과지표 재구성, 참여적 평가방식 마련 등이 필요함.

# [과제6] 시청자위원회 강화와 유료방송 권리 보장

# ① 현황과 문제점

#### 사업자 마음대로 구성하는 시청자위원회

■ 시청자위원회는 시청자권익을 실현하기 위한 법적 기구임. 그러나 현행 방송법은 시청자위원회의 구성 권한을 방송사업자에게 부여함으로써 독립성을 저해하고 있음. 대다수 방송사에서 감독의 대상인 사장 또는 경영진이 마음대로 시청자위원을 위촉하고 있으며, 시청자위원회가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 방치된 유료방송 시청자의 권리

■ 현재 90% 이상 시청자가 가입해있는 유료방송(케이블방송, IPTV, 위성방송)의 경우 이용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가입자들은 결합상품 할인, 약정기간, 채널구성, 무분별한 상품판매, 비실시간(VOD) 콘텐츠 가격, 과다광고, 신규서비스 강요, AS품질 등 상품·서비스 조건에 관하여 다양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지만 이런 요구를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는 제도장치가 미비함

#### ② 개선방향

#### 시청자위원회 독립성과 권한 강화

■ 시청자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그 역할과 권한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법 개정. 독립성 제고를 위하여 위촉의 권한을 경영진이 일방적으로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 현재 국회에는 △사업자와 종사자의 추천 동수로 구성된 편성위원회에서 시청자위원을 위촉하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음.

- 이 개정안은 감시·감독의 대상인 방송사 구성원이 시청자위원 위촉권한을 갖는다는 점에서 여전히 한계가 있음.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위촉하는 방안을 검토.
- 공영방송의 경우 장기적으로 경영에 대한 관리 감독은 이사회에서, 프로그램 편성과 제작에 관한 감독 및 시청자불만처리업무는 시청자위원회에서 담당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함.

#### 유료방송 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화

■ 케이블방송, IPTV, 위성방송, PP 등 유료방송에도 시청자위원회 설치를 의무화. 유료방송 시청자위원회에 ①지역 유료방송 이용실태 조사 ②방송통신 결합상품 가격 공개 요구 ③채널 변경 시 채널 추천권 ④지역 특성을 반영한 공익채널 추천권 ⑤케이블 지역채널의 콘텐츠 제작 및 편성권 등의 권한을 부여. 의무 설치 대상은 △전국사업자, △가입가구 100만 이상의 (M)SO사업자, △시청점유율 5% 이상의 PP 등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함.

# ⟨४⟩ 방송의 독립성

# [과제7]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혁

#### ① 현황과 문제점

#### 집권세력에 기울어진 공영방송 이사회

■ 현재 공영방송의 이사 및 경영진 선임방식은 대통령과 여당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법적근거도 없이 관례적으로 MBC 방송문화진흥회 여야 6대3, KBS 7대4, EBS 7대2의 편향적인 구조로 이사회를 구성함.

#### 정권에 의한 방송장악과 저널리즘 훼손

■ 지난 10년간 정부는 기울어진 지배구조를 활용하여 공영방송 사장을 불법해임하거나 정권의 의지를 충실히 구현하는 대리인을 사장으로 임명함. 정권의 낙점을 받은 사장은 내부적으로 정부 비판 프로그램을 통제하고, 이에 저항하는 언론인들을 탄압하여왔음. 이로 인해 방송의 공정성이 훼손되고,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됨.

#### ② 개선방향

#### 이사회 및 사장선임 방식의 개선

■ 정치권력의 공영방송 장악을 방지하고,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공영방송

의 이사 및 사장 선임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 현재 국회에는 △공영방송이 사진을 13인으로 통일, △여당7명, 야당 6명 추천, △사장 임면 제청시 2/3 찬성(특별다수제), △사장 추천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을 포함한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음.

#### 이사회 운영방식의 개선

- 현재 공영방송 이사회는 회의공개원칙을 무시하고,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음. 이에 국회에는 △이 사회 속기록과 녹음기록 또는 영상녹화기록이 첨부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 개하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음.
- 이와 함께 △비공개 의결 자료의 경우에도 이사회 임기 종료시 자동 공개, 혹은 시한을 정하여 자동공개(3년) △시청자위원회가 의결로써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정보제공 의무화, △시청자가 참여하는 이사회 업무평가회 연 1회 이상 실시 등의 추가적인 개선책이 필요함.

#### 편성위원회 설치 의무화

■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편성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현재 국회에는 △방송사업자가 추천하는 사람 5명, 취재·제작·편성부문 종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5명으로 편성위원회를 구성하고, △편성규약의 제·개정 및 공표에 관한 사항, 방송사업자의 편성규약 준수에 관한 사항,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및 제작의 자율성 침해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토록 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음.

『 차기정부 미디어 규제기구 개편방향 』

차기 정부 부처명	업무		기타
방송통신위원회	미래부	통신/인터넷정책 + 유료방송정책 + 주파수정책	(현) 방통위 확대 및 민주적 재구성
	방통위	- 방송정책 + 이용자보호정책 + 광 고정책 - 공동체미디어정책 기능 강화	
	방통심의위	방송심의	
개인정보보호 위원회	행자부	개인정보보호	(현)개보위 권한 강화
	방통위	인터넷개인정보보호	
사이버보안 전담부처	국정원	국가정보통신망 사이버보안	신설
	미래부	민간영역 사이버보안 감독	

\*(현)방통심의위 -> 해체 후 방송심의는 방통위 이관/ 통신심의는 행정심의 폐지 및 자유로 운 독립기구로 이양

# 2. 미디어생태계 민주화를 위한 정책과제

# [과제8] 언론장악 진상규명 및 반언론행위자 청산

#### ① 현황과 문제점

####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언론탄압

■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방송 공정성 투쟁을 벌이다 정권 또는 부역사장에 의해 부당하게 해고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언론인이 수백 여 명에 이름. 그 중 10명은 여전히 복직하지 못한 채 해직자로 남아 있음.

#### 언론장악 진상규명의 필요성

■ 언론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이며, 방송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봉사할 공적책무가 있음. 또한 방송법은 방송의 공익성과 공정성, 시청자의 권익을 최우선 가치로 제시하고 있음. 따라서 헌법과 방송법을 위반하여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훼손한 행위는 민주적 헌법질서를 파괴한 중대 범죄로 다스려야 함.

#### ② 개선방향

#### 언론장악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및 언론해직자 문제 해결

■ 국무총리 산하에 언론장악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함. △청와대의 KBS 세월호 보도 개입사건, △청와대의 KBS 이사 및 사장선임 개입 사건, △MBC 부당해고 등 백종문 녹취록 사건, △YTN 불법사찰 및 부당해고 사건 등 2008년 2월 25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언론사에서 발생한 방송법 위반 및 언론인 탄압,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여 책임자를 처벌하고, 부당하게 해직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언론인은 복직 및 명예회복, 보상 조치를 취하도록 함.

# [과제9] 무료보편적 지상파방송 강화

#### ① 현황과 문제점

#### 5%대 직접수신율

■ 2012년 디지털 전환 완료에도 불구하고 지상파 방송 직접 수신율은 5%대로 추락하고 있음. 시청

자의 다수가 유료방송에 가입해서 지상파 TV를 시청함에 따라 무료서비스란 말이 무색한 상황이며, 다수가 직접수신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의미에서 보편적 서비스라 부르기도 어려움. 이런 저조한 수신 율은 수신료에 기반을 둔 공영방송 제도의 운영에 심각한 위기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유료방송 정책 편향에 따른 시청자권리 침해

■ 무료 보편적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는 지상파 다채널 방송은 유료방송 사업자의 반발과 정부의 미온적 태도로 인하여 전면적인 도입이 지연되고 있음. 이에 따라 무료로 다양한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는 시청권과 유·무료 방송서비스에 대한 언론소비자의 선택권이 침해되고 있음. 유료플랫폼 편향의 방송정책은 시청자의 요금 부담을 가중시키며, 디지털 환경에서 소외 계층의 정보격차 확대를 초래하고 있음.

#### ② 개선방향

#### 직접수신율 제고

■ 지상파 직접 수신율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목표를 제시하고, 대국민 홍보 및 수신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함. 이를 통해 시청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무료로 지상파 TV를 시청할 수 있는 수신환경을 만들어야 함.

#### 지상파다채널서비스 실시

■ 지상파 다채널 방송을 전면 허용하고, 공영방송부터 조속히 서비스를 실시해야 함. 이를 통해 지상 파 방송의 보편적 서비스를 구현하고, 국민 누구나가 수신료의 대가로 최소한의 미디어이용권, 정보 접근권, 문화향유권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함.

# [과제10] 종편 특혜 폐지

#### ① 현황과 문제점

# 여론다양성의 훼손, 미디어 상업화 초래

■ 종편 개념이 방송법에 도입된 것은 외주전문채널을 만들어 콘텐츠 산업의 발전과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었음. 이명박 정부는 정책취지에 반하여 신문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보수언론에 종편을 승인함으로써 여론의 다양성을 훼손함. 또한 시장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정치적 이유로 4개사를 무더기로 승인하여 시장경쟁을 격화시키고, 극심한 상업화를 초래하였음.

#### 최악의 막말, 편파방송

■ 일부 종편은 오보, 막말, 편파방송을 거듭하여 사회적 공론장을 훼손하고, 저널리즘의 품질을 떨어 트림. TV조선의 경우 2016년 한 해 오보·막말·편파보도로 심의조치 받은 건수만 160여건에 이름.

#### 봐주기 재승인 심사와 규제실패

■ 종편은 승인 조건을 계속해서 위반해왔음. 그럼에도 방통위는 봐주기 심사로 승인기간을 연장해주었으며, 승인조건 위반에 대해서도 솜방망이 징계로 일관함. 종편은 전형적인 규제실패의 사례임.

#### ② 개선방향

#### 의무전송 특혜 폐지 → 선택적 의무전송으로 전환

■ 최근 종편재승인 심사결과는 방통위의 종편정책 실패를 증명함. TV조선은 기준점에 크게 미달하였으며, 방통위는 이례적으로 엄격한 승인조건을 붙임. 이는 종편의 폐해를 방통위 스스로 인정한 것. 기준점에도 못 미치는 불량방송을 의무전송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합리적인 규제가 아님. 따라서 종편에 부여된 의무전송지위를 박탈하고. 2개 정도만을 선택하여 방송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함.

#### 철저한 승인조건 점검

■ 방통위는 이번 재승인 심사에서 공정성 개선조치와 편성계획에 관한 조건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6 개월 단위로 이행실적을 재점검하겠다고 밝혔음. 승인조건은 사업자에게 부여된 의무일 뿐만 아니라 국민과의 약속이기도 함. 승인조건을 위반한 경우 엄격히 심사하여 즉시 승인을 취소해야 함.

#### 광고 및 미디어렙 제도 개선

■ 방송광고시장의 위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종편에 광고제도상의 특혜를 부여하여 논란을 빚어옴. 종편에 대한 광고특혜는 지상파 방송의 시장경쟁력 약화를 초래하여 공적 역할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미디어렙의 경우 1사 1렙에서 가능한 사실상의 직접영업을 규제하기 위해 공/민영 미디어렙 체제를 재정비 하여야 함.

# [과제11] 방송통신업계 간접고용 특수고용 해소

#### ① 현황과 문제점

#### 필수상시업무 외주화하는 거대 방송통신기업들

■ 대다수 방송통신기업들은 설치, 수리, 상담 등 필수상시업무를 외주화하고 있음. 이로 인해 해마다

고용불안이 발생하며 수많은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생계를 위협받고 있음. 이는 방송통신사업자에 공적 적 부를 부여한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정신에 어긋남.

#### 간접고용과 특수고용으로 위험해지는 노동자들

■ 방송통신업계에 만연한 간접고용과 특수고용으로 노동자들은 매년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노조 할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음. 2016년 9월 SK브로드밴드 설치기사가 전주에서 추락해 숨졌지만 결국 산재 인정받지 못함. 2017년 1월 LG유플러스고객센터 현장실습생 사망사건에서 원청인 LG유플러스는 방관함. 간접고용과 특수고용으로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에 건당 수수료를 받는 이중적지위, 이른바 '근로자영자'로 내몰리고 있음. 이로 인해 필수상시업무의 위험도와 감정노동의 강도는 더욱 높아짐.

#### 시청자 권리 훼손

■ 간접고용, 특수고용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설치·수리기사와 상담노동자들은 가입자, 시청자와 면대면 서비스를 실시하는 핵심인력에 해당함. 이들의 노동조건 악화는 서비스품질의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 시청자는 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설명, 서비스 적절성에 대한 친절한 안내를 받을 수 없으며, 설치 수리 업무의 품질도 떨어지게 됨. 특히 과도한 실적압박으로 인해 상담 및 영업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발생하고, 설치·수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음.

#### ② 개선방향

#### 협력업체 노동실태를 재허가 심사에 적극 반영

■ 유료방송·통신사업자들에 대한 공적책무를 강화하고 그에 맞는 허가, 재허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특히 정부가 각 사업자들이 필수상시업무를 직접고용 정규직화하고 있는지 정기 실태조사 등을 통해 확인하고, 이를 공익성 심사와 지역사회 기여도 평가에 적극 반영할 필요. 이를 통해 방송 산업이 지역에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함.

# [과제12] 사이버사찰금지법 제정

#### ① 현황과 문제점

#### 카카오톡 망명사태

■ 2014년 카카오톡 사이버 망명은 정보·수사기관의 사이버사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에서 유래함. 통신비밀보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등 현행 법제도는 정보·수사기관의 필요에 따라 전기통신에 대해 광범

위한 사찰과 정보 수집을 허용하고 있음.

#### 통신자료

■ 연간 1천만명 이상의 통신가입자정보(성명, 아이디,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가 정보·수사기관에 제공되고 있음. 이 제도는 정보·수사기관에 제공하는 요건이나 절차와 관련하여, 법원 등 외부의 통제와 감독 장치를 전혀 두고 있지 않으며, 정부에 비판적인 인터넷 이용자의 신원을 파악하고 사찰하는 데 악용되고 있음.

#### 통신제한조치(감청)

■ 감청의 경우 일반 범죄수사를 하지 않는 국가정보원이 통신사를 통한 감청집행의 98%를 점유하고 있어 비밀정보기관에 의한 오남용 우려가 계속되어 왔음. 특히 통신사를 통하지 않는 직접 감청 집행의 경우 그 통계가 한 번도 국민 앞에 공개된 바 없으며 테러방지법 통과 이후 집행 통계도 집계된 바 없어 비밀 감청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음.

#### 통신사실확인자료

■ 통신사실확인 자료의 경우, 통화내역은 물론 특히 위치정보제공에 남용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함. 우선 경찰은 집회 참가자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상자를 특정하지 않고 집회 장소 주변의 무선 기지국에서 신호가 잡히는 모든 휴대전화 내역을 제공받는 일명 '기지국수사'를 실시하여 왔음. 또한 몇 달간에 걸쳐 대상자의 장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수사기법이 (요건이 엄격하지 않은) 통신 사실 확인자료 제공 절차와 요건에 의해 남용되어 왔음.

#### 압수수색

■ 이메일 및 카카오톡 등 송수신이 완료된 통신 내용의 경우 압수수색영장에 의해 정보·수사기관에 제공되어 왔으며 스마트폰 모바일 환경의 확산에 따라 많은 국민들에게 민감한 문제로 부상하였음. 그러나 당사자 및 그 통신 상대방에 대한 통지권과 당사자 참여권 보장이 부족함. 특히 모바일 메신저 등 디지털 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은 한 번에 다수인에 대한 광범위한 대중 감시(mass surveillance)가 가능하여 위헌 논란이 있음.

#### ② 개선방향

#### 사이버사찰금지법 제정

■ 범죄수사 등을 목적으로 통신정보에 대한 수사가 필요함을 인정하더라도, 이는 예외적으로 제한된 범위에서만 허용되도록 엄격한 요건과 절차가 보장되어야 함. 가입자 정보 요구 시에도 영장주의가 적용되어야 하고, 감청, 압수수색, 위치정보, 통신자료 제공 등의 요건을 엄격하게 강화해야 하며, 과 도한 사찰과 감시를 가능하게 하는 인터넷 패킷감청, 실시간 위치추적, 기지국 수사는 제한되어야 함.

# [과제13]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 ① 현황과 문제점

#### 빅데이터시대 개인정보정책의 중요성

■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의 상업적 이용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이로부터 이용자와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이 요구되고 있음. 최근 홈플러스 및 IMS코리아 사건처럼 정보주체 모르게 개인정보가 유상판매 되면서 소비자들에게 큰 충격과 분노를 안겼음.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반복적으로 겪어온 국민 입장에서는 자신도 모르는 새 개인정보가 유상 판매되는 일이 증가함에 따라 다가오는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이용에 대해 불신감이 증가하고 있음.

#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하는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통신·금융·의료 등 빅데이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를 비식별 조치' 하면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을 허용하여 정보주체인 소비자와 이용자의 개인 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음.

#### ② 개선방향

#### 개인정보 패러다임 재검토

■ 매매 등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규제, 개인정보 처리 로직에 대해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프로파일링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생체정보를 민감정보로 특별히 보호하는 등의 내용을 법률에 포함하여 빅데이터 시대에 정보주체의 권리가 실효성있게 보장되도록 해야 함.

#### 개인정보 유상판매 제도보완 및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중단

■ 개인정보 유상판매에 대한 정보주체의 알 권리와 동의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제도개선과 더불어, 박 근혜 정부의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의 운영 중단 및 재검토를 통해 실질적인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 을 보장해야 함.

# [과제14] 미디어시민주권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공동체미디어진흥정책 수립

#### ① 현황과 문제점

#### 공동체라디오방송 및 마을공동체미디어

- 지난 10년 간, 전국 7개소의 공동체라디오방송국은 1와트의 출력으로 아무런 정부지원없이 열악한 조건으로 운영되면서 그간 축적해온 성과가 공유되고 발전되기 위한 지속가능성의 기반은 매우 취약한 상황임.
- 서울시를 비롯한 다양한 지역에서 마을공동체미디어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전라북도·제주특별자치도 는 마을공동체미디어지원조례를 제정하는 등 시민(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마을공동체미디어활동이 크게 확산·성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중앙정부차원의 지원정책수립 및 공동체라디오방송진흥정책의 연계 시도는 전무함.

#### 시청자미디어재단의 비정상적 운영

- 낙하산 이사장의 운영 및 채용비리, 미디어교육 강사에 대한 윤리강령 준수서약서 강요 등 본래취 지에 전면 배치되는 비정상적 운영으로 많은 문제가 드러남.
- 광역별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자율권과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운영구조는 해당 광역 내 다양한 모델의 지역미디어센터와의 연계와 협력을 저해함.
- 지역미디어센터, 퍼블릭액세스, 미디어교육 등 관련 유관 부처·산하기관 간 역할구획 및 연계체계의 미비는 미디어시민주권실현을 위한 체계적 정책추진을 저해하고 있음
- 진흥기관인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업무에 '방송광고·협찬고지 총괄', '방송시장 공정경쟁 정책', '협찬고지·광고시간 모니터링 기획·운영', '방송시장 모니터링 및 동향분석' 등 사업자 규제성 업무가 포함되어 있어 전문성 강화를 저해하고 있으며, 기관 정체성은 모호함.

#### ② 개선방향

#### 100개의 공동체라디오방송국 설립, 100와트 출력 증강

- 2008년 구)방송위원회에서 공동체라디오방송 신규사업자 공모절차를 진행할 당시, 전국에서 20개가 넘는 수요가 확인되었고, 최근 마을공동체미디어의 활성화에 따라 공동체라디오방송국을 운영할수 있는 단체는 크게 확대되고 있음.
- 이에 공동체라디오방송 신규사업자 선정을 추진해야함. 또한 공동체라디오방송국의 출력증강을 통해 해당 지역·공동체 내의 민주적 공론장을 창출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함.

# 1.000개의 마을, 1.000개의 마을공동체미디어

- 서울특별시,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지방정부 주도의 마을공동체미디어정책의 확산 및 지역 미디어센터와 미디어교육의 확대와 함께 크게 성장하고 있는 마을공동체미디어활동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 수립이 필요함.
- 특히, 기존 공동체라디오방송국의 성과와 경험이 마을공동체미디어에 공유되고,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이 공동체라디오방송국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 지원정책 수립이 필요하며, 전국적으 로 확대되고 있는 마을공동체지원정책과의 연계방안 마련도 필요함.
- 또한 시민들의 마을공동체미디어활동을 통해 만들어지는 영상콘텐츠들이 모든 공영방송에 의무 편성되고 다양한 유료방송으로 확대 될 수 있도록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정책을 강화하고 시민참여 전문채널(RTV)에 대한 지원정책을 정비·강화해야 함.

####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전면 재편

-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이사장 선출 및 의사결정구조를 보다 참여적이고 민주적으로 개선해야 하며, 명실상부한 진흥기관의 위상확립을 위한 소관업무 재편이 필요함.
-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운영권을 광역자치단체로 이관함으로써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미디어·문화마을 정책을 포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역미디어센터 운영/활성화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전국 30여개의 기타 지역미디어센터를 고려한 종합적 지원체계 수립을 촉진시켜야 함.
- 공동체라디오방송 및 퍼블릭액세스 진흥정책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방식의 재편방안(공동체미디어재단으로 전환 고려)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기존 미디어교육정책은 미래창조과학부문화체육관광부교육부지방정부 등과의 혐의·조율을 통해 재조정 방안을 마련해야함.

# [과제15] 민주시민양성을 위한 종합적 미디어교육지원 정책 정비

#### ① 현황과 문제점

#### 미디어교육의 필요성 증대, 지원정책의 파편화

- 수많은 방송 채널과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유무선망, 세계 1위의 스마트폰 보급률에도 불구하고, 무기력한 지상파, 편파 시비의 종편, 가짜뉴스와 여론 조작, 중독과 개인정보 유출 등 우리의 미디어환경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음.
- 미디어를 통한 정보를 비판적으로 읽고, 미디어를 통해 사회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민주시민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미디어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여전히 취약하며 지원정책은 다양한 부처 및 기관으로 분산되어 있음.

#### 미디어교육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 미비

- 학교, 민간, 정부 등 다양한 영역에서 미디어교육이 진행되고 있지만 미디어교육의 철학과 기본방향 및 장기적 전망을 제시하고 종합적 지원체계수립의 근거로서 법제는 미비함.
- 특히, 미디어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민간주체와의 소통과 의견수렴을 위한 시도 및 시스템의 부재는 다양한 미디어교육현장의 상황과 요구를 수렴·반영한 법제정비를 저해하고 있음.

# ② 개선방향

# 세대·계층지역을 포괄하는 모두를 위한 미디어교육지원정책 체계 정비

- 유아어린이·청소년·성인·노인 등 전 생애별, 장애인·이주민·여성 등 계층별, 마을·동네 등 지역별, 그외 각종 공동체 등 모두가 미디어교육을 통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고 민주시민의 역량을 갖출 수 있는 미디어교육지원정책의 수립이 필요함.
- 방송통신위원회·미래창조과학부·문화체육관광부·교육부 및 교육청·지방정부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미디어교육정책의 체계화를 위한 콘트롤타워(가칭 미디어교육진흥위원회) 구축 방안 마련.

#### 민간과의 소통협력을 통한 미디어교육 지원 관련법제정

■ 학계, 미디어교육강사, 학교교사, 시민단체, 미디어분야현업인 등 미디어교육 관련 민간주체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한 미디어교육 지원 법안 마련 및 제정을 위한 노력 필요.

# [과제16] 범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한 방송통신 규제체계 정비

#### ① 현황과 문제점

#### 유료방송발전방안과 통합방송법의 한계

■ 미래부와 방통위는 수년 간 유료방송 규제체계 정비를 연구하여 작년 말 유료방송발전방안을 내놓음. 이 방안은 공영방송 등 무료지상파 분야, 콘텐츠사업자 시장을 배제한 채 특정시장만을 고려해만든 반쪽짜리 정책에 불과함. 방송시장을 산업적 차원에서만 접근하여 플랫폼의 대형화, 독점화를 유도하고 있음. 특히, 논의과정에서 시청자와 시민단체, 노동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사업자 의견만을 청취하여 절차상 하자가 심각하며 지역성 보장방안이나 시청자 후생제고 방안의 실효성이 부족함.

# ② 개선방향

# 유료방송발전방안의 폐기, 통합방송법 논의를 위한 범사회적 기구 구성

■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통합방송법 정부안은 방송법과 IPTV법의 기술적인 결합에 불과함. 공영방송, 공공미디어서비스 영역의 획정 및 발전전략 수립, 콘텐츠(산업)의 다양성 확보, 지역방송의 발전, 공동체미디어의 확대 등 전체 미디어 생태계를 아우를 수 있는 종합적인 정책 검토가 필요함. 차기 정부는 통합방송법 마련을 위한 범사회적인 논의기구를 구성하여 사회적 합의를 통해 방송통신의 규제체계를 정비하여야 함.